**계약변경합의서**

**제1조 (목적)[[1]](#footnote-1)**

본 합의서는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 ) (이하 '□□□'라 한다) 간에 체결한 계약을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변경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변경대상 계약)**

본 합의서로 인하여 변경되는 계약은 ( )[[2]](#footnote-2) (이하 '원계약'이라 한다)이다.

**제3조 (변경 내용)**[[3]](#footnote-3)

①

②

**제4조 (해석)**

본 합의서는 원계약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고, 본 합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원계약을 따른다.

**제5조 (효력)**[[4]](#footnote-4)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케이티'와 '□□□'은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2부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상호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 --- | --- |
|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정자동)  대표이사 ○○○ [[5]](#footnote-5) (인) | (법인명)  (주소)  대표이사[[6]](#footnote-6) (인)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사가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인 상대방과 원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계약에서 정한 물량이나 하도급대금을 줄이기 위하여 원계약을 변경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고, 당사가 이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원계약을 변경하는 때에는 하도급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 바람.

   한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열등한 지위에 있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물품 구입강제 등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경영에 간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심사지침은 위 행위의 구체적인 예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계약기간 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등을 들고 있음(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48면 참조). 따라서, 당사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계약의 내용을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할 것임.

   참고로,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금지해야 할 행위로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물량을 통상적으로 발주하는 수량보다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고 있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수탁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당사가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규정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임. [↑](#footnote-ref-1)
2. 변경대상 계약명을 확인한 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케이티와 □□□ 간에 (계약일자) 체결한 (계약명)' [↑](#footnote-ref-2)
3.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 원계약 제○조 제○항의 “○○○○○”를 “○○○○○”로 변경한다.

   - 원계약 제○조 제○항을 삭제한다.

   - 원계약 제○조 제○항을 추가한다.

   “○○○○○”

   - 원계약 제○조 제○항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또는 변경 전·후를 비교하는 표를 이용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  |  |
   | --- | --- | --- |
   | 변경 조항 | 변경 전 | 변경 후 |
   | 제○조 제○항 | “○○○○○” | “○○○○○” |
   | 제○조 제○항 | “○○○○○” | 삭제 |
   | 제○조 제○항 | 없음 | “○○○○○” 신설 |

   [↑](#footnote-ref-3)
4. 본 합의서의 효력발생일을 실제 체결일과 다르게 정하려고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하기 바랍니다.

   - 본 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본 합의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날로부터 ( )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본 합의서는 20○○.○○.○○.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footnote-ref-4)
5. 대표이사가 직접 서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대표이사 ○○○를 대리하여 00 부문장/ 그룹CTO/그룹CIO/그룹CFO/그룹CHRO/실/본부/소/원장 ○○○ (인)'으로 규정함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당사 직제규정 별표3은 부문장/그룹CTO/그룹CIO/그룹CFO/그룹CHRO/실/본부/단/소/원장에게 ‘대내·외의 협약 및 협정체결 사항’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footnote-ref-5)
6. 정확한 상대방 법인명, 본점 소재지 주소 및 대표이사 성명 등은 [www.iros.go.kr](http://www.iros.go.kr)(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 등본 열람/발급을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footnote-ref-6)